

수 원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4가합2963 주주총회결의취소

원 고 1. 박근용

2. 김기식

원고들 주소 서울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참여연대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

담당변호사 김형태, 이정희, 송호창, 위대영, 이인영

피 고 주식회사 삼성전자

주 원 시 영등구 매탄동 416

대표이사 윤중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정근, 정진영, 고창현, 이준희

변 론 종 결 2004. 11. 23.

판 결 선 고 2004. 12. 14.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4. 2. 27. 차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승인, 사외이사 및 이사선임의 건에 관하여 한 결의를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반도체 및 전자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소액주주들이다.

나. 피고회사는 2004. 2. 27. 서울 중구 순화동 7 소재 중앙일보사 호암아트홀에서 아래와 같은 3개의 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는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함)를 개최하였다.

(1) 제1호 안건 : 제35기(2003. 1. 1. ~ 2003.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위) 승인의 건

(2) 제2호 안건 : 사외이사, 사내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3) 제3호 안건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다. 이 사건 주주총회는, 그 개최 당시 의결권 있는 총주주 75,388명 중 위임장을 제출한 주주를 포함하여 257명이 참석하였으며, 출석한 의결권이 있는 주식주는 전체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127,042,063주 중 66.23%인 84,133,744주였던바, 제1호 안

건은 그에 관한 기명투표 결과 당시 피고회사 계열의 금융·보험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수를 제외한 의결권 있는 참석 주식수 84,181,883주의 99.38%에 해당하는 83,663,158주가 찬성함으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제2, 3호 안건은 일부 주주들의 제안에 따라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이던 윤종용이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박수로써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참석 주주들 대부분이 위 요청에 응하여 박수를 함으로써 기명투표를 거치지 아니하고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이 선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은, ①의정 윤종용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에 있어 참석 주주들의 의사 진행발언과 질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면서 피고회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의 찬성을 유도하고, ②제2, 3호 안건에 관하여는 정상적인 질의응답 등의 토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부 주주들의 반대 또는 이의표시에도 불구하고 박수로써 승인결의를 이끌어내는 등 그 의결방법에 있어 법령 및 정관을 위반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의장 윤종용이 참석 주주들의 발언권, 질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원안대로의 찬성을 유도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주주총회의 진행에 있어 의장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한을 당연히 가질 뿐만 아니라 그 심의 과정에서 주주들의 의사가 공정하고 원만하게 반영되도록 의사진행을 하여야 하고, 주주들은 주주권에 내재하는 권리로서 회사의 업무에 대한 질문권이 있으며, 임원들로서는 주주들의 질문사항이 의안과 무관하거나 설명시 회사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전문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장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권한으로서 안전의 내용과 질의 내용 및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심의 및 표결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의장이 정한 심의 및 표결방법에 대하여 주주들로부터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총회에 들어 그 결의로서 심의 및 표결방법을 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강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주주인 원고 박근용, 소외 송호창, 김현수, 이은정과 피고회사의 주주인 원고 김기식으로부터 의견권을 위임받은 소외 김상조 등(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소액주주권의 행사자로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 원고 등은 의사진행발언 및 질문기회를 윤종용 의장에게 요청하였으나 그 중 일부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윤종용 의장이 참석 주주들의 발언권, 질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원안대로의 찬성을 유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단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아래 (3)항에서 인정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의사진행은 참석 주주 대다수의 의견과 현실적인 상황들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진행되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3)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제2,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위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직후 피고회사의 감사위원 황재성의 감사보고가 있

었는데, 원고 등이 위 감사보고에 대한 질문기회를 요구하자, 윤종용 의장은 나중에 질문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나) 이후 영업보고와 주식소각 결과보고가 진행되었으며 원고 등은 소액주주권 행사를 방해하는 무당권 총회진행이라며 반발하였던바, 이에 윤종용 의장은 각 안건별 제안설명 후 개인별 발언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총회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원고 등은 주주총회의 목적이 의안 결의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여전히 반발하였다.

(다) 윤종용 의장은 제1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였고, 주주인 소외 송백규는 박수로써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등은 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라) 그 후 원고 등을 비롯한 일부 주주들이 투자유가증권 매각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임원들의 책임 여부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시 수사대상이던 피고회사의 일부 이사들에 대하여 피고회사가 징계 기타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질문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측으로부터 투자유가증권의 가격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일부 이사들에 대하여는 아직 조사 중이어서 회사의 명예를 선주시켰다거나 주가를 떨어뜨렸다는 등의 평가를 내릴 수 없는 상황이므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 등은 피고회사측의 답변이 충분치 못하였음을 지적하면서 계속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였고, 이에 윤종용 의장은 법적 판단이 내려진 후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바) 한편 위와 같이 총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참석 주주들의 상당수가 원고 등의 이의제기 및 질문에 대하여 불만 또는 항의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원고 등은 다

시 피고회사가 지배주주로 있는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부실화로 인한 손실 및 향후 대처방안에 관한 질문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회사측의 답변과 일부 주주들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사) 그런데 이후에도 원고 등으로부터 위 삼성카드건에 대한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윤종용 의장은 대다수 주주들의 동의를 얻어 원고 등의 질문을 허용하지 아니한 채 원고 등의 이의의사만을 확인한 후 제1호 안건을 기명투표에 부쳤고, 투표결과 제1호 안건은 참석주식수가 99.38%에 해당하는 압도적인 비율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아) 이어 윤종용 의장의 제2호 안건 중 사외이사 선임건에 대한 총회 상정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인 소외 정귀호의 제안설명이 있는 후, 발언기회를 얻은 주주 소외 이승구가 제2호 안건을 박수로써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제안하였던바, 참석 주주들 대다수는 박수로써 동의하였으나 원고 등은 이의를 제기하며 질문기회권 요구하였다.

(자) 윤종용 의장으로부터 발언기회를 얻은 원고 등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중자 당시 피고회사의 사외이사이던 요란맘(Goran S. Malm) 이사가 어떠한 의견을 표시하였는지에 관하여 질문하면서, 이는 요란맘 이사단 재선임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던바, 이에 대하여 일부 주주만이 피고회사측의 답변을 요구하였을 뿐, 참석 주주들의 대다수가 원고 등의 질문이 적절치 아니함을 지적하며 기명투표 방식이 아닌 간이한 방식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윤종용 의장은 '당시 요란맘 이사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유상증자 건에 대하여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은 내부 준비자료들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려진 것이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으며, 이어 피고회사측 재무이사인

소의 최도석이 세부사건에 관하여 답변을 하였다.

(차) 이후 윤종용 이장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진 것 같으면서 제2호 안건 중 사외이사 선임건에 관하여 기명투표로 의결한 것인지 여부를 참석 주주들에게 물었고, 이에 원고 등은 충분한 토론을 통한 정보제공 및 기명투표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아직까지 충분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을 표시하였으나, 참석 주주들의 대다수가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원안대로 박수로써 승인할 것을 요구하여, 결국 위 안건은 참석 주주 대다수의 박수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카) 한편 원고 3인 윤중용 의장의 위와 같은 총회 진행에 반발하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이 사건 주주총회장에서 퇴장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는 특별한 이의나 질문이 제기되지 아니한 채 나머지 안건들이 모두 참석 주주들 대다수의 박수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타) 상장회사 표본 주주총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의장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각 주주들의 발언시간을 1의제에 1회, 1회의 발언시간은 5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같은 규정 제25조는 의장으로서 중복된 발언,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그 밖에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을 금지할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제2, 3호 안전에 관한 결의가 일부 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토론없이 박수로써 승인된 하자있는 결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주주총회의 결의방식에 관하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어 회의체의 운영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기명투표 외에 출석한 주주의 총의 즉 다수 주식 소유자의 의사를 산정할 수 있는 거수, 기립 등의 방법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며, 나아가

주식의 분표비율에 따라서는 주주의 이의여부만을 확인하거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다수 주주의 의사만을 확인하는 등 보다 간편한 방법도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총회의 토의과정을 통하여 그 최종단계에 있어서 의안에 대한 각 주주의 확정적인 찬부의 태도가 자연적으로 분명해지고, 그 의안에 대한 찬성의 의결권 수가 그 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 수에 달한 점이 명백해진다면 그 때에 있어서 표결이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때 의장이 다시 그 의안에 대하여 찬반의 의결권수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총회의 결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경우 제2, 3호 안건에 관한 결의에 있어 찬반의 의결권수를 산정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기는 하나, 한편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당시 출석한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수에 대한 집계와 제1호 안건에 대한 기명투표절차를 통하여 정족수 산정에 기초가 되는 출석주식수가 분명하게 되었던 점, 제1호 안건에 관한 토론 및 결의과정을 통하여 참석 주주들 대다수가 피고회사의 경영진과 실적에 대한 신뢰 또는 지지란 표명한 점, 제2호 안건 중 사외이사 선임건에 관하여 참석 주주들 대다수가 간소한 절차로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원고 등이 이의제기 및 질문을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피고회사측의 답변과 참석주주들의 의견개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점, 이후 참석 주주들 대다수의 요청 또는 지지에 의하여 위 사외이사 선임건은 박수로써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이의를 표시한 주주가 아무도 없었던 점, 원고 등이 이 사건 주주총회장에서 퇴장한 후 결의된 나머지 안건들은 모두 참석 주주들의 의견에 따라 이의없이 박수로써 원안대로 가결된 점, 원고 등은 소액주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결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점 등을 알 수 있어, 이로써 제2, 3호 안전에 대한 각 최종가결 단계에서는 각 안전에 대한 찬성의 의결권 수가 그 총회의 결의에 필요한 의결권 수에 도달하였음이 명백하여졌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의 결의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였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인정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가사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참석 주주들의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일부 안전들이 박수로써 가결되어 그 결의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들이 다수주주에 의한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조차 불명확하게 할 정도의 미미한 하자라 보기는 어려운 반면 그러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위 총회결의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그 결의취소로 인한 피고회사 또는 주주들의 이익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점, 만약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가 취소된다면 그 소급효로 인하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등이 승인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이에 기하여 기시행된 배당 등이 무효로 되고, 위 총회에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이사의 행위가 무효로 되는 등 회사법률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될 것인바, 피고회사가 국내 굴지의 기업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결과는 국가경제에 부담요소로 작용할 여지마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이들 취소함이 부적당하여 상법 제379조 규정에 따라 재량기각을 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들의 주장은 이들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